

거창군 장남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

발의일자	2017. 5. .
발 의 자	박희순의원외 명

1. 제안이유

○ 거창군 장남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 위치(안 제3조)
- 라. 운영 및 기능(안 제4조, 안 제5조)
- 마. 회원 등록 및 의무(안 제6조, 안 제7조)
- 바. 연회비 납부 및 반환, 면제(안 제8조, 안 제9조)
- 사. 이용제한(안 제10조)
- 아. 회원 등록 취소(안 제11조)
- 자. 대여기간 및 수량 등(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136조, 제139조, 제144조
- 나. 예산조치: 2017년 450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 . ~ . . .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반영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군 장난감은행”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등(이하 “장난감등”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대여하거나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거창군 장난감은행(이하 “장난감은행”이라 한다)은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에 둔다.

제4조(운영) ① 장난감은행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 ② 군수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장난감은행의 기능을 하는 차량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장난감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이하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장난감은행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장난감등의 구입, 대여 및 관리
2.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회원 등록)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한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연회비 납부 및 반환)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매년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회원 등록을 취소한 경우
2.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난감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난감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연회비의 반환기준 및 절차 등은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연회비의 면제) 군수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6.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의 구성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난감은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난감등 또는 장난감은행의 시설물·비품 등을 훼손한 경우
2. 대여 받은 장난감등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회원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창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회원이 등록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장난감등을 분실·훼손·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4. 장난감은행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다른 사람의 계정(아이디)이나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6. 회원 등록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회원 등록을 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대여 기간 및 수량 등) 장난감등의 대여 기간과 수량, 대여료 및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